

거창군 성평등 기본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군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평등”이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평등·발전·평화의 이념이 구현되는 남녀관계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이유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성별을 이유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괴롭히는 언동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그리고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족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민의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군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군민은 군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

제7조(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2. 성평등정책 추진목표
 - 가. 성평등의 촉진 및 성평등 문화 확산
 -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 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3.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4. 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
5. 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자원 조달방법
6. 그밖에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 개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성평등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거창군 성평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위촉직 위원은 군의원과 여성단체, 여성인력 개발 관련 전문가, 성평등 정책과 관련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정책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해촉) 위촉직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가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성평등 촉진 정책

제14조(적극적 조치) 군수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군정참여 확대) ① 군수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성비율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 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16조(공직 등의 성평등 촉진) ① 군수는 성평등한 공직 참여를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도입·시행하고,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성별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점검·관리해야 한다.

제17조(경제활동 참여촉진) ① 군수는 여성의 취업·창업 및 기업 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인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제활동에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경력개발·임금 등의 차별을 개선하여 고용 전반에 걸쳐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간제근로여성 및 단시간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일·가족 양립 지원) 군수는 남성과 여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6. 일·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
7. 가족친화 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평등한 가족생활) ① 군수는 가족생활 전반에서 민주적이며 평등한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차별 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① 군수는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을 보호하고, 여성이 모성으로 인하여 가족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정 내 임신, 출산, 양육 등 과정에 남성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이로 인하여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부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성평등의식 제고) 군수는 공공기관, 가정·학교·사회교육, 기업에서 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22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 군수는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예방하여 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사태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3조(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의 방지 등) ① 군수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평등

관점의 인권통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여성의 복지증진) ① 군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5조(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여성의 안전과 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여성친화적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인프라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제26조(여성의 건강증진) 군수는 보건의료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27조(성평등 관련 정보 제공) 군수는 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축적·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군수는 주요 성평등 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제29조(여성주간 행사) ① 군수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여성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군수는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31조(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군수는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군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 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거창군 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2조(국제협력 지원) 군수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여성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33조(군민참여) ① 군수는 성평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관 정책 수립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양성 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의견제안자 중 군정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34조(유공자 표창) 군수는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4장 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

제35조(성인지 예산 분석 및 평가) 군수는 군 전반의 예산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성평등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수립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군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결산, 성인지 통계 등 성평등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특정 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책의 성평등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주민에게 공표하고 평가할 수 있다.

제5장 성평등기금

제37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용한다.

②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조례」 규정에 갈음한다.

제6장 보칙

제38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범위와 위탁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한다.

제39조(수당 등)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창군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